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22.] [환경부령 제643호, 2016.3.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9호, 2016. 3. 22. 공포, 2016. 3.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 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문

### ○ 환경부령 제64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3항"을 "영 제15조의2제4항"으로, "출고량"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5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11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품군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

3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65퍼센트 이상,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는 75퍼센트 이상, 이동전화단말기는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감경 대상자란을 감경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감경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감경 사유란(중전의 감경 대상자란) 중 "회수시설 등을"을 "회수시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한다.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1호 중 "활성화,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활용촉진"을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중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을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출고량(수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비고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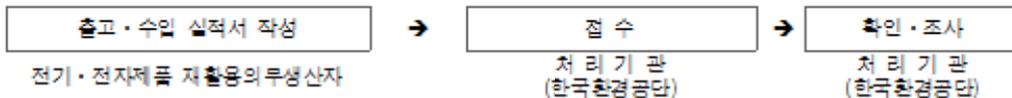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작성요령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개별 품목별 출고대수와 출고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법 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 품 군	②제 품 명	③재 활용 원료 사용량(kg)	비 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 합니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수수로 없음
------	---	-----------

### 작성방법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 합니다)를 사용한 제품명을 적습니다.
- ③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판매량(매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판매대수	판매량(kg)	매입대수	매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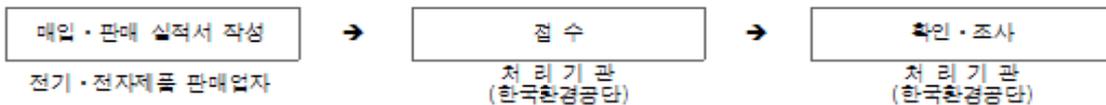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귀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작성요령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개별 품목별 판매/매입대수와 판매/매입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③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재활용의무량	②재활용량	
-----------	---------	-------	--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③제품군	④출고량 (kg)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⑦재활용 실적 (kg)	⑧회수 및 인계방법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⑩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재활용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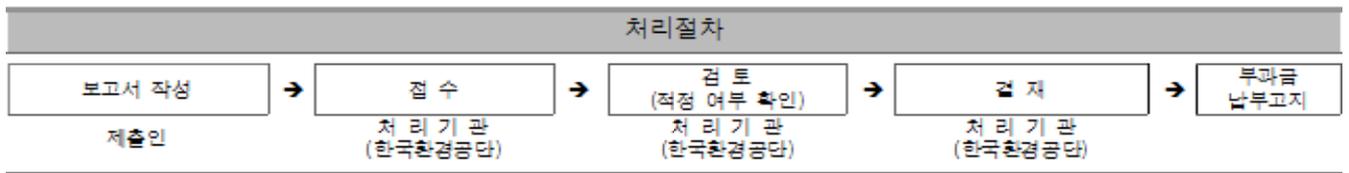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 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요령**

-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투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재활용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⑩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사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앞 쪽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회수의무량		②회수량			
	③제품군	④매입량 (kg)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	⑥제품군별 회수의무량 (kg)	⑦회수실적 (kg)	⑧회수방법
회수의무 이행결과						

⑨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 처리절차



### 작성요령

- ① 해당 연도의 회수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회수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무 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매입량(품목별로 매입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 이행 전년도 총 매입량 중 자신이 매입한 전년도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회수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폐제품을 자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는 '자가 회수'로, 제조사 물류센터가 회수한 경우는 '대행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급된 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 분할납부신청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분할납부 신청 사항	총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회별	납부일	납부금액	비고
	제1회	8월 31일		
	제2회	11월 30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후단 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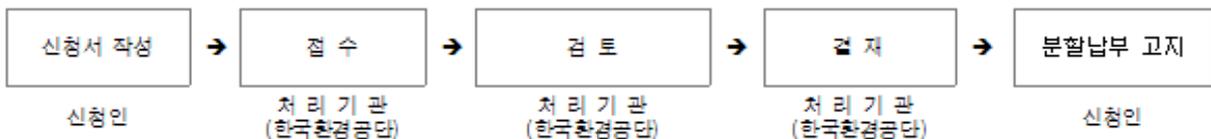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p>1. 2. (생략)</p> <p>②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b> (생략)</p> <p>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u>7월 20일까지</u>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u>20일까지</u>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u>6월 30일까지</u>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제목개정 2013.12.31]</p>	<p><b>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b> (현행과 같음)</p> <p>② - <u>8월 31일까지</u>로 - - - - - - - - - - <u>30일</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7월 31일</u> - - - - - - - - - - - - - - -</p>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환경부령 제64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3항”을 “영 제15조의2제4항”으로, “출고량을”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5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11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품군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65퍼센트 이상,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는 75퍼센트 이상, 이동전화단말기는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감경 대상자란을 감경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감경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감경 사유란(중전의 감경 대상자란) 중 “회수시설 등을”을 “회수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한다.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1호 중 “활성화,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활용촉진”을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중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을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출고량(수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비고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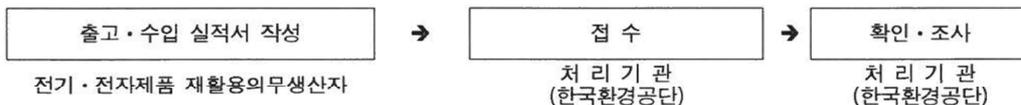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작성요령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개별 품목별 출고대수와 출고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재활용 원료 사용량(kg)	비고
자료 제출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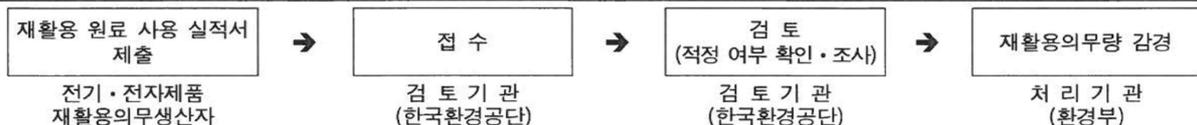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합니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합니다)를 사용한 제품명을 적습니다.
- ③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판매량(매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판매대수	판매량(kg)	매입대수	매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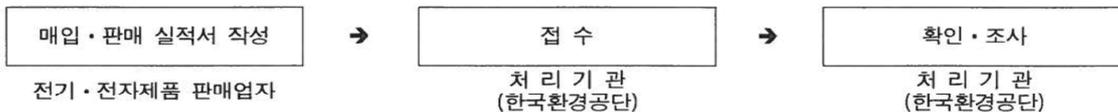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작성요령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개별 품목별 판매/매입대수와 판매/매입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③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재활용의무량	②재활용량
-----------	---------	-------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③제품군	④출고량 (kg)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⑦재활용 실적 (kg)	⑧회수 및 인계방법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⑩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재활용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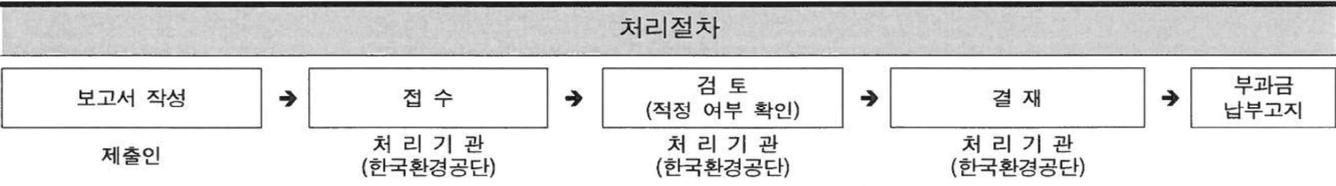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li> <li>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li> <li>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li> <li>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작성요령**
-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무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재활용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⑩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회수의무량		②회수량		⑦회수실적 (kg)	⑧회수방법
	③제품군	④매입량 (kg)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	⑥제품군별 회수의무량 (kg)		
회수의무 이행결과						

⑨비용 지급내용	제 품 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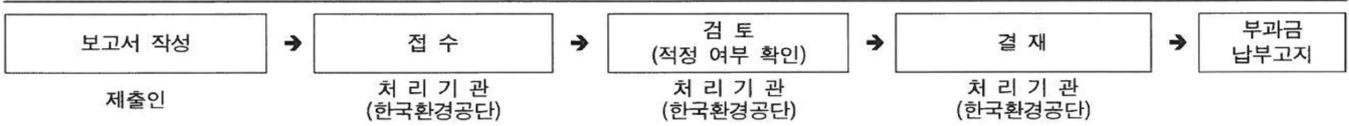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작성요령

- ① 해당 연도의 회수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회수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무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매입량(품목별로 매입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매입량 중 자신이 매입한 전년도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회수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폐제품을 자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는 '자가 회수'로, 제조사 물류센터가 회수한 경우는 '대행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급된 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분할납부신청서

※ EcoAS([www.ecoas.or.kr](http://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분할납부 신청사항	총 부과금액	
--------------	--------	--

	회별	납부일	납부금액	비고
분할납부금액	제1회	8월 31일		
	제2회	11월 30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후단 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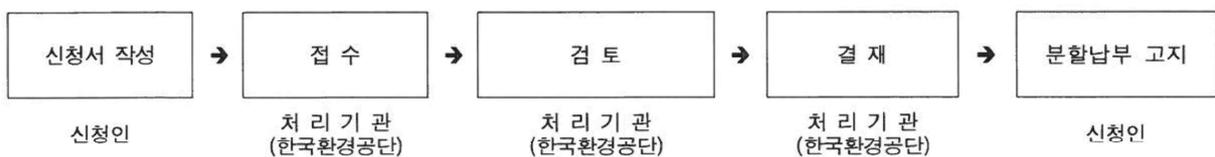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리절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9호, 2016. 3. 22. 공포, 2016. 3.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교육부령제9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증정정

관보 제18708호(2016. 2. 29.)에 게재된 “교육부령제9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공포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교육부장관

◇ 구분 : 관보 173쪽 10행,11행 부칙다음

[별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관련)

구 분	교육공무원	일반직·별정직· 관리운영직 공무원	계
강릉원주대학교	467	144	611
강원대학교	1,241	283	1,52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11	77	288
경북대학교	1,536	347	1,883
경상대학교	1,015	296	1,311
공주대학교	738	213	951
군산대학교	422	184	606
금오공과대학교	253	81	334
목포대학교	393	130	523
목포해양대학교	133	115	24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4	225	439
부경대학교	737	280	1,017
부산대학교	1,467	341	1,8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24	155	579
순천대학교	405	135	540
안동대학교	341	118	459
전남대학교	1,557	419	1,976
전북대학교	1,275	302	1,577
제주대학교	838	265	1,103
창원대학교	401	122	523
충남대학교	1,114	256	1,370